

# 2020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추가 부담액 부과 · 징수 공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17212호)」제47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3항에 의거하여 '2020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추가 징수목표액 및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 징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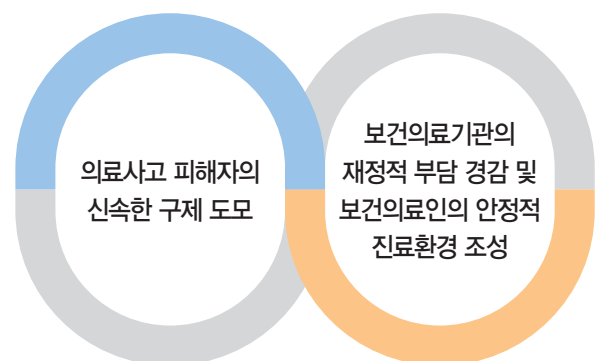
2020. 12. 1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개요 및 목적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성립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상환 받는 제도입니다.



## 관련 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제3항

## 2020년도 대불비용 추가 부담액 부과 및 징수

### 부과 대상자

**병원종별 보건의료기관 개설 운영자 총 1,355명**

※ 단, '19.1.1. 이후 병원 종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별도 부과

### 부과금액

**총 1,691백만원**

### 징수 방법

**요양급여비용 공제 : '21.3.1. ~ '21.12.31.**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납부(법 제47조제4항)

※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추후 가상계좌 납부안내 예정

-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함

※ 대불비용 부담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 분할납부 신청 가능

### 보건의료기관별 납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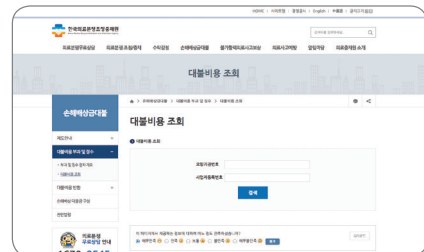
**1,248,010원**

- 개별 부과금액 = 병원종별 대불재원 총당 필요액을 균분하여 정액으로 부담

※ 개별 납부안내문 발송 예정 ('21년 1월 초 발송 예정)

개별기관 대불비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접속
- 2 「손해배상금 대불」(상단) 선택
- 3 「대불비용 조회」(좌측) 선택
- 4 요양기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분들이 납부하여 주신 소중한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전국 보건의료기관개설자분들이 납부하여 주신 소중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일시적 경영 악화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보건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유용한 제도입니다.